보 령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관의 장

제1017호 2023. 2. 28.(화)

조 례

ㅇ제1965호: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ㅇ제1966호: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ㅇ제1967호: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ㅇ제1968호: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1
ㅇ제1969호: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ㅇ제1970호: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규 칙

ㅇ제688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

훈 령

ㅇ제308호:보령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 ----------18
ㅇ제309호: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0
ㅇ제310호:보령시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규정 일부개정규정 ----------25

회람							

발행 **보 령 시** (편집 **홍보미디어실 ☎ 930-3163**)

예 규

○제58호: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 지침 ----------27

고 시

○제2023-46호:도로명주소 고시 ----------28
○제2023-50호: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29
○제2023-53호:2023년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 고시 ----------30
○제2023-54호: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37
○제2023-55호: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38

공 고

○제2023-38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소양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39
○제2023-396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43
○제2023-397호:도로정비 사업시행 허가에 관한 공고 ----------54
○제2023-401호:도로의 지정 · 공고 ----------55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

보령시 조례 제1965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을 "의장"으로, "되며"를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작전과장"을 "정작과장,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으로 한다.

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

11.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 동

보령시 조례 제1966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 및 이용시간 등)”을 “(적용대상 및 사용·이용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시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가목 중 “주교다목적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을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파크:”로 하고, 같은 항 나목 중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보령스포츠클라이밍:”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2, 3, 4,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2. 28.>

□ 체육시설현황 및 사용(이용)시간 (제5조 관련)

○ 체육시설현황

명 칭	세 부 시 설	위 치
보령종합경기장	주 경 기 장 보 조 경 기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대천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탁 구 장	보령시 대천로 136
보령종합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주교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28
오천소규모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435 일원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볼 링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보령국민체육센터	수 영 장 헬 스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7
보령스포츠클라이밍	인 공 암 벽 장 AR클 라 이 밍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보령스포츠파크	주 경 기 장 보 조 경 기 장	보령시 신흑동 산178번지 일원

○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

1. 종합경기장

구 분	하절기 (3월~10월)	동절기 (11월~2월)	비고
주 간	08:00~18:00	09:00~18:00	주중
야 간	18:00~21:00	18:00~21:00	주중
토요일, 공휴일	08:00~18:00	09:00~18:00	

※ 주중: 월요일~금요일

2.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볼링장

시 설 별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주 중	08:00~22:30	하절기
		08:00~22:00	동절기
	토요일, 공휴일	09:00~21:00	
볼링장	화요일~일요일	10:00~23:00	

3. 국민체육센터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주 중	06:00~22:00	
토요일, 공휴일	06:00~18:00	일요일 제외

4. 보령스포츠클라이밍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주 중	13:00~21:00	
토요일, 공휴일	09:00~18:00	일요일 제외

5. 보령스포츠파크

구 분	하절기 (3월~10월)	동절기 (11월~2월)	비고
주 간	08:00~18:00	09:00~18:00	주중
야 간	18:00~21:00	18:00~21:00	주중
토요일, 공휴일	08:00~18:00	09:00~18:00	

※ 주중: 월요일~금요일

[별표 2] <개정 2023. 2. 28.>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용료		비 고
			공휴일·토요일	평 일	
종합경기장	체육경기	트 랙	50,000	30,000	◦야간 사용 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필 드	100,000	60,000	
	체육경기 이 외	트 랙	150,000	100,000	
		필 드	300,000	200,000	
대천체육관	체 육 경 기		50,000	38,000	
	체육경기이외		160,000	120,000	
보령종합 체육관	체 육 경 기		70,000	50,000	
	체육경기이외		200,000	150,000	
주교다목적 체육관	체 육 경 기		50,000	38,000	
	체육경기이외		160,000	120,000	
오천소규모 체육관	체 육 경 기		50,000	38,000	
	체육경기이외		160,000	120,00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	체육행사 및 체육경기 이외		50,000	38,000	
보령 스포츠 파크	주 경기장	체육경기 인조	40,000	25,000	1일 1시간당 요금 (1일 1회 3시간 제한)
		체육경기 천연	100,000	75,000	
		체육경기 이외 인조	60,000	42,000	
		체육경기 이외 천연	145,000	100,000	
	보조 경기장	체육경기 인조	24,000	15,000	

※ 사용자가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의 50% 징수
※ 트랙은 우레탄 육상경기장이며 필드는 잔디축구장임
※ 요금은 1일 기준임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1일 1회	기본료(20,000) + (5,000 × 마이크 수)	◦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전광판	1일 1회	기본료(30,000) ×사용일수	
조명시설	1일 1회	기본료(20,000) ×사용일수	
수도료	1일 1회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1일 1회	실제 사용한 전기 요금	
냉·난방 시설	1일 1회	[대천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 [유류 소모량(L/h) × 사용시간 × 유류 단가]	
		[보령종합체육관] 기본료(15,000)+[1℃ 축열비용 (냉,난방) × 축열온도변화]	
		[주교다목적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오천소규모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식당	1일 1회	기본료(30,000) +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별표 3] <개정 2023. 2. 28.>

이 용 료 (제10조 관련)

(단위: 원)

시설별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종합경기장	개인	성 인	2시간	2,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1,000	
	단체	성 인	〃	1,400	
		어린이,청소년,군인	〃	700	
대천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보령 종합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주교다목적 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오천소규모 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스쿼시장	회원요금(성인)		1개월	50,000	50%감면 (청소년,군인)
			3개월	135,000	
			6개월	255,000	
	일일요금(성인)		2시간	5,000	
국민체육센터	개인	성 인	2시간	3,500	
		청소년,군인	2시간	2,000	
		어린이	〃	1,500	
	회원	성 인	1개월	55,000	
		청소년,군인	〃	40,000	
		어린이	〃	30,000	
볼링장	성인	게임당	1인 1게임	2,500	
		회수권정액요금 (쿠폰50장)	쿠폰1장은1게임	90,0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게임당	1인 1게임	2,000	
		회수권정액요금 (쿠폰50장)	쿠폰1장은1게임	80,000	
	볼링화대여료		1켤레	1,000	
	라커사용료		월 기준	중: 3,000 대: 5,000	할인 없음

※ 1) 이용기준: 1인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단, 볼링장은 게임기준)
2) 회원감면: 3개월 10%, 6개월 15%, 12개월 20%

비 고

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2. 20명 이상의 단체 이용 시는 20% 할인한다. (국민체육센터에 한함)
3. 1개월 이상 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는 휴회로 기간을 둘 수 있다.
 가. 가임기 여성의 생리: 7일 이내 휴회
 나. 질병, 출장, 휴가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만큼 휴회
4. 단체 및 정액요금은 중복할인 불가함

[별표 4] <개정 2023. 2. 28.>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구분	감 면 기 준	감면 비율
사용료	국가, 충청남도 또는 보령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6.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7.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0%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50%

[별표 5] <개정 2023. 2. 28.>

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 관련)

구분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비율)
사용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정지된 시일만큼)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100%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90%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위약금(납부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용료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100%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구분	감 면 기 준	감면 비율
이용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훈련	8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65세 이상인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7.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8.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강습·훈련 19.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개인 이용료로 적용, 볼링장은 제외)	50%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정함)	10%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 동

보령시 조례 제1967호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 보령시장인

보령시 조례 제1968호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3회)

2. 대상포진(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4. 인플루엔자(매년 1회)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2. 대상포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70세 이상 시민
   나.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한다)
4.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제4조(예방접종의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는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시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접종비용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 동

보령시 조례 제1969호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를 “이란”으로,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장비를 제조 및 활용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소인프라”란 수소에너지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수소를 생산, 저장,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 주민의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6조제7호 중 “수소시범도시”를 “수소도시”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주변지역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설이 소재한 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
3.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일 보령시장인

보령시 조례 제1970호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3.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업무 관련 부서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

보령시 규칙 제688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매출 금액의 60퍼센트”를 “1억 원”으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전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일 (보령시장인)

보령시 훈령 제308호

보령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령시 청년정책 전반과 취업·창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복리 증진 및 지역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보령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보령청년 커뮤니티센터
2. 위치: 보령시 명천로4길 21

제3조(기능) 보령청년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2. 청년정책 사업 홍보
3. 청년활동 및 행사기획 지원
4.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센터 공간 대여 및 제공
6. 그 밖에 청년 정책 전반 및 청년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3.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시설 이용 신청 등) ①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에서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대관한다.

③ 시설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센터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3.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내 청년 관련 기관·단체 및 직업안정기관 등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 보령시장인

보령시 훈령 제309호

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령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령시와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에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 원칙)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보령시 관련 행정,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보령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부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7 -

▪ 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 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보령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귀하

보령시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일 보령시장인

보령시 훈령 제310호

보령시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규정 일부개정규정

보령시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책을"을 "시책의"로, "위한"을 "위하여"로, "책임제를 실시함에 대한"을 "책임제 실시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당면 중요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귀청후"를 "귀청 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령시 당면 주요시책 지도 분담표(제3조 관련)

읍면동	분담 부서명	
웅천읍	기획감사실, 체육진흥과	
주포면	문화교육과	
주교면	에너지과, 지역경제과	
오천면	신산업전략과, 해양정책과	
천북면	자치행정과, 대외협력과	
청소면	열린민원과, 회계과	
청라면	관광과, 세무과	
남포면	새마을공동체과, 토지정보과	
주산면	안전총괄과, 환경보호과	
미산면	산림공원과	
성주면	홍보미디어실, 건설과	
대천1동	도시과, 수도과	
대천2동	도로과, 교통과	
대천3동	건축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대천4동	신속허가과, 복지정책과	
대천5동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김동일

보령시 예규 제58호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지침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고시 제2023-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 2. 21.

보 령 시 보령시장인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길 33 등 2건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부여 사유
청라면 향천리 731-5	청라면 향천리길 33	2023. 2. 21.	단독주택 신축
청라면 향천리 731-5	청라면 향천리길 33-2		단독주택 신축

○ 도로명주소 변경: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화장골길 98-14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성주면 성주리 220	화장골길 72-32	화장골길 98-14	2023. 2. 21.	건물군 분할
성주면 성주리 220	화장골길 72-32	변경 없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토지정보과(☎041-930-0149)에 문의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21.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하고,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보령시 고시 제2023 - 50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 2. 21.

보 령 시 보령시장인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금당길 234-47 외 2건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부여 사유
미산면 옥현리 산 151	미산면 금당길 234-47	2023. 2. 21.	창고시설 신축
청라면 나원리 794	청라면 상중길 50		창고시설 신축
보령시 동대동 665-1	보령시 신평로 16		근린생활시설 신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4185)에 문의 또는 보령시 누리집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하고,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보령시 고시 제2023 - 53호

2023년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 고시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일

보 령 시 장

1. **적용기간 : 2023. 3. 1. ~ 2024. 2. 29.(1년간)**

2. **적용지역 : 보령시 전지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3. **적용대상 : 보령시 관내 신규개인급수공사**

4.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는 계량기 구경 D15(13)~D50㎜범위 내 개인급수 공사비 산출에 적용**(단, 계량기 구경 D75㎜이상 급수공사비는 별도설계)**함.**

5. **기타 관계 서류 비치 및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수도과(상수도팀 ☎ 93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23년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 설계서 및 정액표 1부. 끝.

별첨 1-1) 2023년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 설계서 1부.

(앞 면)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 설계서
(현 장 조 사 보 고 서)

수전위치			번지		
신 청 자	주 소		번지	성 명	
조 사 자	직		성 명		
배관종별			본 관 구 경	D =	mm
수압상태			계량기 구경	D =	mm
암거횡단		개소	규 격		
			정 액	**금**	**원**

총 공 사 비	**금 원**	**(금 원)**
관 급 자 재 대	금 원	(금 원)
도 급 공 사 비	금 원	(금 원)
시 설 분 담 금	금 원	(금 원)
설 계 수 수 료	금 원	(금 원)
처 리 의 견		

(위 치 도)

(뒷 면)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 산출내역서

승인 날짜	2022. . .
승인 번호	제2022 - 호

구 분	금 액
총 공 사 비	**금 원**
관 급 자 재 대	금 원
도 급 공 사 비	금 원
시 설 분 담 금	금 원
설 계 수 수 료	금 원

정 액 제 설 계 내 역

	공 종 및 품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관급자재대	수 도 계 량 기		D15		개			
	계 량 기 보 호 통		D15		개			
	소 계							
도급공사비	관 부 설		D20		M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D15		개소			
	본 관 분 기		D75×20		개소			
	새 들 분 수 전		D75×20		개소			
	급 수 관 분 기		D75×20		개소			
	청 동 밸 브 소 켓		D15		개			
	이 경 소 겟 (PE 관)		D20×15		개			
	암 거 횡 단		1.0×1.0m		개소			
	관 매 달 기				M			
	석 분 부 설				㎥			
	중 기 운 반		0.2㎥급	1	식			
	교 통 안 내 원			1	인			
	포장공	아스콘덧씌우기	t= 5㎝					
		아스콘포장	t=20㎝		㎡			
		콘크리트포장	t=20㎝		㎡			
		아+콘크리트	t=5㎝+t=15㎝		㎡			
	소 계							

수전위치 : 번지 신청자 번지 / 0 0 0

별첨 1-2) 2023년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표 1부.

2023년 상수도 신규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표

1.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단위:원)

구 분	D15mm	D20mm	D25mm	D32mm	D40mm	D50mm	비고
시설분담금	250,000	670,000	1,200,000	2,360,000	3,720,000	5,840,000	
수수료	6,000	6,000	6,000	9,000	12,000	12,000	

※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5 및 제40조 정액제 적용(수수료: 관급자재검사, 설계, 준공 수수료)

2. 본 관 분 기

(단위:개소당/원)

구 분		D20mm	D25mm	D32mm	D40mm	D50mm	비고
본관분기	D90(75)mm	140,200	192,700	200,500	247,100	274,100	
	D100mm	167,700	199,300	210,000	257,500	284,500	
	D150mm	174,300	205,900	216,600	268,000	295,000	
	D200mm	180,800	216,300	227,100	278,400	305,400	
	D250mm	187,400	226,700	237,500	288,800	315,800	
	D300mm	199,900	210,400	247,900	299,200	326,200	
	D400mm	200,400	247,500	258,300	309,600	336,600	

3. 수도관부설 및 계량기(보호통설치 포함) 설치

(단위:원)

구 분	D20(16) mm	D25(20) mm	D32(25) mm	D40(32) mm	D50(40) mm	D63(50) mm	비고
관부설(1m당)	2,390	2,880	3,850	4,770	6,170	8,110	
계량기 및 보호통 설치	239,100	291,800	311,300	332,700	420,000	464,900	

4. 급수관 분기(신(구))

(단위:원)

구 분		D25mm(20)	D32mm(25)	D40mm(32)	D50mm(40)	D63mm(50)	비 고
급수관분기	D25mm(20)	31,700					PVC-PE PE-PE STS-PE 공통 적용
	D32mm(25)	37,500	35,100				
	D40mm(32)	53,700	53,800	52,100			
	D50mm(40)	74,500	74,600	75,100	73,500		
	D63mm(50)	85,600	85,700	86,200	86,900	84,300	

5. 이경연결 (구)

(단위: 개소당/원)

구 분	D20mm(16)	D25mm(20)	D32mm(25)	D40mm(32)	D50mm(40)	비 고
D25mm(20)	4,770					PE이경소켓
D32mm(25)	6,300	6,300				
D40mm(32)	9,330	9,330	9,330			
D50mm(40)	13,530	13,530	13,530	13,530		
D63mm(50)	19,160	19,160	19,160	19,160	19,160	

6. 암거횡단

(단위: 개소당/원)

구 분	13mm ~ 50mm 공통적용	비고
암거(0.5×0.5m)	73,000	
암거(1.0×1.0m)	120,700	
암거(1.5×1.5m)	211,800	
암거(2.0×2.0m)	349,800	

7. 각종포장 굴착 및 복구

(단위: 원)

구 분		1m당	비고
토 사 구 간(0~1.0m)		13,450	
블럭구간	소형고압블럭복구	21,700	
콘크리트구간	t=0.10m	59,100	
	t=0.15m	68,300	
	t=0.20m	75,500	
아스콘구간	t=0.05m	49,500	(아스콘덧씌우기 구간)
	t=0.15m	77,100	
	t=0.20m	87,700	
아스콘+콘크리트구간	아스콘5cm+콘크리트20cm	95,800	

8. 중기운반 및 석분부설

(단위: 원)

구 분		1개소당	비고(A+B)
중 기 운 반 (A)	시 내 권 (동 지 역)	42,100	85,200
	시 외 권 (읍면지역)	86,700	129,800
석 분 부 설 (B)	급수 · 본관 분기점	43,100	

9. 기타 관로보호공, 밸브설치, 교통안전 요원배치 등

(단위:원)

구 분		1m당	비고
관 로 보 호 공	D20㎜ (t=20㎜)	31,400	외부보호관 포함
	D25㎜ (t=25㎜)	38,700	〃
	D32㎜ (t=32㎜)	43,000	〃
	D40㎜ (t=40㎜)	50,100	〃
	D50㎜ (t=50㎜)	56,000	〃
소프트실 제수밸브 설치	D=40mm, 표준형 / 개소당	561,000	
	D=50mm, 표준형 / 개소당	635,000	
관 매달기	보통인부 / 1시간당	73,200	D80mm기준
교통안전 요원배치	보통인부 / 1시간당	32,400	

10. 관급자재대(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

(단위:원)

□ 계량기

구 분		개소당	비고
계량기	ϕ 15㎜(13)	57,500	동파, 역류방지, 스테인레스, (조달수수료 포함)
	ϕ 20㎜	73,390	
	ϕ 25㎜	96,010	
	ϕ 32㎜	135,520	
	ϕ 40㎜	187,500	
	ϕ 50㎜	248,030	
디지털 계량기	ϕ 15㎜(13)	96,620	동파, 역류방지, 스테인레스, (조달수수료 포함)
	ϕ 20㎜	115,210	
	ϕ 25㎜	143,370	
	ϕ 32㎜	175,440	
	ϕ 40㎜	250,740	
	ϕ 50㎜	321,520	

□ 계량기 보호통

구 분		개소당	비고
계량기 보호통	ϕ15㎜(13)- 심도 800㎜	139,950	무단수 앵글밸브, 역류방지엘보, 코팅관, 보온재 상승방시, 동파방지보온재, 갈바륨PE이중 강판뚜껑 (조달수수료 포함)
	ϕ20㎜ - 심도 800㎜	184,080	
	ϕ25㎜ - 심도 800㎜	218,370	
	ϕ32㎜ - 심도 800㎜	323,130	
	ϕ40㎜ - 심도 800㎜	468,110	
	ϕ50㎜ - 심도 800㎜	536,880	

※ 급수공사비의 최소단위는 1m로 하며, 거리산정은 반올림한다.
※ 계량기,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자재로 한다.
※ 기타, 정액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보령시 고시 제2023-54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이 확인되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3.

보 령 시

○ 도로명주소 폐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로 206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폐지 사유
웅천읍 노천리 324-28 외 1필지	웅천읍 독산로 206	2023. 2. 23.	건물멸실 후 신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4181)에 문의 또는 보령시 누리집 및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2.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하고,
- 공공기관에서 비치 ·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보령시 고시 제2023 -55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 2. 24.

보 령 시 보령시장인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로 206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부여 사유
웅천읍 노천리 324-28 외 1필지	웅천읍 노천리 206	2023. 2. 24.	노인회관 신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4181)에 문의 또는 보령시 누리집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하고,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보령시 공고 제 2023 - 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소양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소양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보 령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양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 사 업 위 치: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일원

○ 사업시행자: 보령시장(건설과장)

○ 사 업 기 간: 2023. 03. 01. ~ 2023. 12. 31.

○ 사 업 규 모: 소하천정비 (돌붙임 L=270m, 전석쌓기 L=156m)

2. 토지출입

○ 출 입 사 유: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출 입 토 지: “붙임” 토지조서 참고

○ 출 입 기 간: 2023. 03. 01. ~ 사업종료까지

3. 보상대상: “붙임” 토지조서 참고

※ 측량결과에 따라 편입 면적의 증감이 발생 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추후 감정 평가하여 개별 통지

○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협의(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계약 및 등기 후 20일 이내 현금 지급(계좌 입금)
- 단,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 지상권 등 이해관계인 해지 후 계약 체결

○ 보상절차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2023. 2. 27. ~ 2023. 3. 13. (14일 간)

○ 장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4층)

6. 기 타

○ 토지·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음

○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인 별로 통지할 예정임

○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041-930-3843) 문의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2023.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보령시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소양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23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령시 공고 제2023-3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보령시 대천동, 주교면 일원의 '대천방조제~시도1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보 령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보령시 대천동 1166 ~ 주교면 신대리 100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대천방조제~시도1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규모	사업규모	비고
대로 3-3호	B=25m, L=1,320m	A=310㎡	진입부정비
대로3-6호	B=25m, L=1,587m	B=25m, L=1,587m, A= 40,820㎡	전체개설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보령시장(도로과장)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마.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1

사. 열람기간: 2023. 2. 28. ~ 2023. 3. 14.(14일간)

아.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41-930-3859) ※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자. 관계도서: 보령시청 도시과에 비치(게재 생략)

차.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사업시행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도로과(☎ 041-930-3942),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41-930 -3863)에 문의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조서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대3-3	대3-6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보령	대천		1199	도	31,406	128	229	국토교통부					
2	보령	대천		1166	답	2,423		1,035	김*남 외1인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9길 22, 비동 103호				
3	보령	대천		1246	답	3,293		355	임*수 외3인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65, 307동 201호				
4	보령	대천		1167	답	3,174		985	이*학	천안시 신방동 905, 향촌현대아파트 301-603				
5	보령	대천		1168	답	3,405		165	최*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5의내월도				
6	보령	대천		724	천	33,598		426	국토교통부					
7	보령	대천		1134	답	3,868		1,070	송*섭 외1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816, 519동 1501호				
8	보령	대천		1135	답	3,008		826	인*익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23-15				
9	보령	대천		1136	답	3,041		827	인*익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23-15				
10	보령	대천		1137	답	2,995		813	이*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리 457				
11	보령	대천		1138	답	2,975		828	김*근	충청남도 보령시 대락골길 99-8				
12	보령	대천		1139	답	2,926		802	심*수	출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산 19				
13	보령	대천		1111	답	2,926		777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1110동				
14	보령	대천		1110	답	3,868		1,002	권*선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100, 100동 1404호				
15	보령	대천		637 39	구	46,344		3,506	농림축산식품부					
16	보령	대천		1109 4	전	4,015		1,489	권*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13동 303호				
17	보령	대천		1108 17	전	1,123		811	권*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13동 303호				
18	보령	대천		611 5	답	226		44	기획재정부					
19	보령	대천		611 2	답	3,302		699	권*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1-11. 현대아파트 105-1606				
20	보령	대천		611 1	철	149		44	국토교통부					
21	보령	대천		608 5	철	1,643		375	국토교통부					
22	보령	대천		608 11	답	1,782		400	이*조 외1인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03 국민연립 가-205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대3-3	대3-6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23	보령	대천		608 4	답 2,136		297	이*조 외1인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03 국민연립 가-205				
24	보령	대천		609 3	답 1,145		172	조*제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1길 101-4				
25	보령	대천		609 2	철 608		400	국토교통부					
26	보령	대천		609 4	도 45		16	조*제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1길 101-4				
27	보령	대천		608 22	도 124		19	이*복 외6인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안길 74-7				
28	보령	대천		608 3	답 800		163	이*복 외6인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안길 74-7				
29	보령	대천		608 33	철 1,065		887	국토교통부					
30	보령	대천		608 42	철 84		77	보령시					
31	보령	대천		608 35	도 147		19	보령시					
32	보령	대천		608 34	도 192		181	보령시					
33	보령	대천		595 11	도 213		1	보령시					
34	보령	대천		608 41	철 63		60	보령시					
35	보령	대천		595 3	답 675		29	권*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1 3동 303호				
36	보령	대천		595 14	철 21		21	보령시					
37	보령	대천		608 2	철 27		25	국토교통부					
38	보령	대천		595 2	철 604		598	국토교통부					
39	보령	대천		595 6	답 145		2	감*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97-1				
40	보령	대천		595 7	전 196		22	조*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95-1				
41	보령	대천		594 3	답 307		8	권*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1 3동 303호				
42	보령	대천		594 2	철 251		251	국토교통부					
43	보령	대천		594 5	답 147		23	조*만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중앙로 487-7				
44	보령	대천		593 3	대 922		30	이*복 외6인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안길 74-7				
45	보령	대천		593 2	철 479		479	국토교통부					
46	보령	대천		593 4	답 773		59	한*수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산19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대3-3	대3-6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47	보령	대천		573 3	철	26		17	국토교통부					
48	보령	대천		573 2	철	400		400	국토교통부					
49	보령	대천		573 5	답	344		79	사*예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73-4				
50	보령	대천		574 3	대	1170		171	이*복 외6인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안길 74-4				
51	보령	대천		574 2	철	823		823	국토교통부					
52	보령	대천		571 2	철	40		40	국토교통부					
53	보령	대천		571 4	답	211		35	한*택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10-5				
54	보령	대천		577 1	대	390		49	이*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71				
55	보령	대천		577 2	철	13		13	국토교통부					
56	보령	대천		574 4	대	284		122	사*예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47				
57	보령	대천		568 3	대	79		58	사*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2동 202호				
58	보령	대천		568 2	철	410		410	국토교통부					
59	보령	대천		562 3	전	711		37	이*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96				
60	보령	대천		568 4	전	447		170	신*길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55				
61	보령	대천		564 22	전	496		124	이*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3				
62	보령	대천		564 4	철	955		955	국토교통부					
63	보령	대천		564 3	대	122		106	신*길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55				
64	보령	대천		564 26	대	53		23	보령시					
65	보령	대천		564 24	대	148		61	보령시					
66	보령	대천		564 12	전	321		146	이*걸	충청남도 보령시 양지길 1,2층				
67	보령	대천		567 2	철	20		20	국토교통부					
68	보령	대천		567 1	대	460		114	김*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5-1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대3-3	대3-6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69	보령	대천		564 2	대	20		20	김*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5-1				
70	보령	대천		564 11	도	69		29	보령시					
71	보령	대천		565 2	철	142		142	국토교통부					
72	보령	대천		565 3	대	251		170	김*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5-1				
73	보령	대천		566 2	대	149		1	김*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5-1				
74	보령	대천		564 21	대	157		7	이*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09				
75	보령	대천		564 7	전	248		173	이*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09				
76	보령	대천		565 1	도	20		9	김*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5-1				
77	보령	대천		564 1	대	7		7	이*복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09				
78	보령	대천		554 4	도	79		19	김*예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55-1				
79	보령	대천		556	대	575		14	김*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2-5				
80	보령	대천		555 2	전	198		87	김*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62-5				
81	보령	대천		555 1	철	50		50	국토교통부					
82	보령	대천		554 3	전	17		17	이*직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66				
83	보령	대천		554 2	철	331		331	국토교통부					
84	보령	대천		554 5	대	235		235	보령시					
85	보령	대천		557 4	전	572		415	이*복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리 586				
86	보령	대천		557 2	철	549		549	국토교통부					
87	보령	대천		553 2	철	1		1	국토교통부					
88	보령	대천		553 1	철	754		58	한*복	동대동 414 주공아파트 113동 207호				
89	보령	대천		550 12	전	336		132	이*복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리 586				
90	보령	대천		557 3	대	1193		11	이*복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57-3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대3-3	대3-6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91	보령	대천		558	전	390		27	권*철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85				
92	보령	대천		산6 2	철	1,190		928	국토교통부					
93	보령	대천		550 1	임	429		157	이*복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리 586				
94	보령	대천		산6 3	임	149		77	권*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1 3동 303호				
95	보령	대천		산7 2	철	1,884		1,605	국토교통부					
96	보령	대천		549 1	전	1,448		112	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2길 34 106동 1102호				
97	보령	대천		548 4	철	539		539	국토교통부					
98	보령	대천		548 3	전	1,851		103	박*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48-3				
99	보령	대천		548 1	철	159		159	국토교통부					
100	보령	대천		548 2	전	40		23	정*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87				
101	보령	대천		548 5	대	780		13	오*자	충청남도 보령시 작은오랏7길 36				
102	보령	대천		산8 3	철	3,372		1,907	국토교통부					
103	보령	주교	신대	산195 3	철	6,050		2,176	국토교통부					
104	보령	주교	신대	1254 17	전	1,082		882	김*홍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1254-17				
105	보령	주교	신대	1254 10	대	516		206	이*자 외1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97-460 궁전빌라 에이동 104호				
106	보령	주교	신대	1254 11	도	43		43	국토교통부					
107	보령	주교	신대	1003 9	도	658		5	환경부					
108	보령	주교	신대	1254 15	도	112		30	환경부					
109	보령	주교	신대	1254 27	대	474		25	송*천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1254-7				
110	보령	주교	신대	1254 30	전	239		192	유*희 외2인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177-18				
111	보령	주교	신대	1254 9	도	26		26	국토교통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대3-3	대3-6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12	보령	주교	신대	1254 19	구	2,226		1,839	농림축산식품부					
113	보령	주교	신대	1254 16	도	182		182	환경부					
114	보령	주교	신대	1254 6	전	340		99	임*진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772				
115	보령	주교	신대	1254 18	대	1,576		83	장*룡 외1인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뒷골길 39				
116	보령	주교	신대	1003 13	수	1,302		510	환경부					
117	보령	주교	신대	1254 14	대	764		4	임*영	충청남도 보령시 현대로 26 104동 703호				
118	보령	주교	신대	1254 4	도	23		16	국토교통부					
119	보령	주교	신대	1254 13	도	60		60	환경부					
120	보령	주교	신대	1254 3	대	194		102	임*은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78 103동 1703호				
121	보령	주교	신대	1005 7	도	23		4	국토교통부					
122	보령	주교	신대	1254 12	도	10		10	환경부					
123	보령	주교	신대	1254 1	대	494		176	김*배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100 102동 1404호				
124	보령	주교	신대	1003 23	도	8,741		79	국토교통부					
125	보령	주교	신대	1005 5	도	50		18	국토교통부					
126	보령	주교	신대	1005 3	도	96		63	김*원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1004				
127	보령	주교	신대	1003 5	도	73		46	김*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5 신태양아파트 에이-310				
128	보령	주교	신대	1005 6	도	66		4	손*식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90-2				
129	보령	주교	신대	1277	도	8,223		493	국토교통부					
130	보령	대천		1247 14	잡	12,352	39		한국농어촌공사					
131	보령	대천		1199 1	도	14,247	143		국토교통부					
소 계						259,008	310	40,820						

□ [대천방조제~시도1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열람대장

[대천방조제~시도1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열람기간 : 2023. 2. 28. ~ 2023. 3. 14.(14일간)

○ 열람장소 : 보령시청(도시과)

■ 실시계획인가 열람자 명부

번호	열람일		열람자		비고
	월	일	주 소	성 명	

■ 실시계획인가 열람의견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대천방조제~시도1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의견제출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

공고 제2023-397호

도로정비 사업시행 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 정비 사업 시행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령시장 [인]

사업시행자	보령시장(새마을공동체과장)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명천동)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면도)	노선명	청소102호(장진선)
공사의종류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따른 도로 정비		
구 간	기점: 청소면 진죽리 391-1 종점: 청소면 진죽리 351-2(0.2㎞)		
공사시행장소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998번지 일원		
착 공 예 정 일	2023년 3월 일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목적과 사유: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따른 도로 정비

보령시 공고 제 2023-401호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를 지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7.

보 령 시 장

□ 도로지정 현황

소재지	지번	지정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건축주	도로길이	도로너비	비고
신흑동	745	142㎡	답	최0 송0림	최0	34m	4m	

- 분할측량 시 도로지정 면적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신속허가과(☎041-930-2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